

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10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안 제1조 내지 제28조 수정
 -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
- 조례안 제5조 내지 제6조 수정
 -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원정수 및 위원회 기능 수정
- 조례안 제18조제5항 삭제
 -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 규정(보험가입 의무) 삭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15. 09. 23. ~ 2015. 10. 13.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.
- 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및 보육시설”을 “및 어린이집”으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“보육시설”이란”을 ““어린이집”이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“보육교직원”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,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,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·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보육시설”을 “어린이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와 보육시설 종사자는”을 “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와 보육교직원은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10명”을 “1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“보육시설”을 “어린이집”으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기능) 위원회는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.

제11조 앞의 제3장의 제목 “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”을 “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공립보육시설 (이하 “보육시설”을 “공립어린이집(이하 “어린이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보육시설”을 “어린이집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보육시설”을 “어린이집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보육시설”을 “어린이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보육시설”을 “어린이집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보육시설”을 각각 “어린이집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및 제2항 후단 중 “보육시설”을 각각 “어린이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보육시설”을 “어린이집”으로 한다.

제17조의 제목 “(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구성)”을 “(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)”으로 하고,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보육시설”을 “어린이집”으로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어린이집 원장

제17조제2항 중 “보육시설의 종사자가”를 “보육교직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보육시설”을 “어린이집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보육시설”을 “어린이집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보육시설”을 “어린이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.

제21조제1호 중 “보육시설”을 “어린이집”으로 한다.

제22조 중 “보육시설”을 “어린이집”으로 한다.

제26조제1항제1호 중 “보육시설”을 “어린이집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

중 “보육종사자”를 “보육교직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비

4.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

제26조제1항제8호 중 “보육시설”을 “어린이집”으로 한다.

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보육시설”을 “어린이집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라 평창군 영유아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·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및 <u>보육시설</u> 설치·운영과 보육지원 등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·2. (생략) 3. "<u>보육시설</u>"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. 4. (생략) 5. "<u>보육시설 종사자</u>"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,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·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 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u>및 어린이집</u>-----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"<u>어린이집</u>"이란 ----- ----- ----- 4. (현행과 같음) 5. "<u>보육교직원</u>"이란 <u>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,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,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·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</u>

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.

제3조(책임) ① 평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,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②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와 보육시설 종사자는 보육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·④ (생략)

제5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(생략)

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1. (생략)

2. 보육시설의 장(이하 "시설장"이라 한다) 및 보육교사 대표

3. ~ 5. (생략)

제6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

직원을 말한다.

제3조(책임) ① -----

-----어린이집-----
-----.

②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와 보육교직원은 -----

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5조(구성) ① -----

-----15명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어린이집 -----

3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기능) 위원회는 「영유아보

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, 위탁에 관한 사항
2.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3.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
4. 보수교육의 실시·위탁에 관한 사항
5.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, 위탁에 관한 사항
6.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
7.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
8. 벽지·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
9.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장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

제11조(설치 및 운영) ① 군수는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

육법 시행령」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.

제3장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

제11조(설치 및 운영) ① -----

여 법 제12조에 따라 평창군 공
립보육시설 (이하 "보육시설
" 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육시
설을 설치·운영할 때에는 법
제26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
동 등에 대한 보육(이하 "취
약보육"이라 한다)을 우선적으
로 실시해야 한다.

제12조(명칭) 보육시설의 명칭은
공립00어린이집(이하 "어린이
집"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제14조(위탁운영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개인에게 위탁
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(이
하 "수탁자"라 한다)이 직접 시
설장이 되어 보육시설을 운
영하여야 하며, 「영유아보육법
시행령」 제21조에 따라 시설장
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야
한다.

③ 군수는 보육시설을 위탁하고
자 하는 경우 그 수탁자 선정은
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④ 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

-----.

② -----어린
이집 -----

-----.

제12조(명칭) 어린이집 -----

-----.

제14조(위탁운영) ① (현행과 같
음)

② -----

-----어린이집 -----

-----.

③ -----어린이집 -----

-----.

④ 어린이집 -----

하는 자는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(생략)

제16조(위탁계약)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,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서 정한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계약증서를 교부 하며,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 보육시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기간 만료 후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보육시설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

-----어린이집-----
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위탁계약) ① -----

-----어린이집-----

-----.

② -----
-----어린이집-----

-----.

③ -----
-----어린이집-----

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제17조(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구성)

① 보육시설의 자율적이고 특성 있는 운영을 위해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 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, 운영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

1. 시설의 장

2. ~ 4. (생략)

② 위원장은 해당 보육시설의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정·개정에 관한 사항

2. ~ 4. (생략)

5.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④ (생략)

제18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

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와 위탁

-----.

제17조(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)

① 어린이집 -----
-----어린이집 -----
-----어린이집 -----

-----.

1. 어린이집 원장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보육교직원
이 -----
-----.

③ -----
-----.

1. 어린이집 ---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어린이집 -----
--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수탁자의 의무) ① -----

-----어린이집 -----

계약사항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생략)

⑤ 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에 대비하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(화재·상해·배상보험 등을 말한다)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⑥ (생략)

제21조(위탁금지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탁자가 될 수 없다.

1. 법 제16조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없는 사람

2. (생략)

제22조(위탁의 제한) 군수는 같은 수탁자에게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위탁할 수 없다.

제26조(비용의 보조 등)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1. 보육시설의 설치, 증·개축
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⑥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위탁금지) -----

-----.

1. -----어린이
집 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위탁의 제한) -----
-----어
린이집 -----.

제26조(비용의 보조 등) ① -----

-----.

1. 어린이집 -----

및 개·보수비

2. 보육종사자-----

3.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지증진비

4.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

5. ~ 7. (생략)

8. 그 밖의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강원도지사, 군수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②·③ (생략)

제28조(보조금의 환수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2. 보육교직원-----

3.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비

4.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

5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-----
-----어린이집--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보조금의 환수) -----

---어린이집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」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.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.

4. 작성자

작 성 자	주민생활지원과장 남 동 선
연 락 처	(033)330-2150

관계 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영유아보육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~ 2. 생략
3. "어린이집"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.
4. ~ 5. 생략

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

제6조(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)

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(이하 "중앙보육정책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(이하 "지방보육정책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0.3.15., 2012.6.29.>

- ② ~ ③ 생략

제7조(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)

① 생략

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

1. 삭제 <2012.6.29.>

2.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
3.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. 다만,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.

4.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

5.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

6.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

7. 삭제 <2015.9.15.>

8. 삭제 <2012.6.29.>

9.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·벽지·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

10.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□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
제24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)

① 생략

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3.19., 2011.12.8.>

1. ~ 5. 생략